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명시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, 제3조)
- 나. 온도와 발화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(안 제5조)
- 다.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(환기구 등)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(안 제7조)
- 라.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 설치 (안 제9조)
- 마.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정함 (안 제11조)
- 바. 지하구와 관련된 현행 화재안전기준 4개 동시 일부개정 (부칙)
  -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(제4조)
  -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(제10조)
  -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(제4조)
  -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(제4조, 제7조, 제9조)

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참조 : 소방분석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[assa44@korea.kr](mailto:assa44@korea.kr)
- 2)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,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(우)30127
- 3) 팩스 : 044-715-7621

4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(전화 : 044-205-753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및 소방청 홈페이지(<http://www.nfa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●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-412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」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4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## 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,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

※ 화학물질명(CAS No. 포함)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

## 2. 주요내용

가.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등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

- 별표 제1호(신규화학물질) 심사완료('20. 2.~4.) 및 유독물질로 심사완료된 물질
- 별표 제2호(기존화학물질) 심사완료('19. 5.~12.)된 물질

※ 동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

나.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(CAS No.), 유독물질 해당여부, 주요 유해성, 분류·표시 등 고시

## 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(위해성평가연구과, 전화 032-560-7219/7194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www.nier.go.kr>법령정보>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●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-1호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4일

울산해양경찰서장

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

「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(가산금)를 부과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.

## 1. 관련법령

가. 국세기본법 제10조,11조

나.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
## 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 3. 관련사항 문의 : 울산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

(주소 : 울산 남구 신선로 20, 울산해양경찰서, ☎ 052-230-2417)

## 4. 공고내용

가.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서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해당금액이 채납될 경우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.